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대통령령 제31851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할 때에는”을 “하려는 때에는”으로, “등기하여야”를 “등기해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를 “대표자가 신청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등기 신청을하려는 때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에 당해”를 “경우 해당”으로, “3주이내에”를 “3주 이내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주 이내”를 “3주 이내”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6조 중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를 “제3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로, “3주이내에”를 “3주 이내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별 노동조합”을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행하여야”를 “이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를 “교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소재지변경”을 “소재지 변경”으로, “행정관청에게”를 “행정관청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3일이내에”를 “3일 이내에”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관청에 대하여”를 “행정관청에”로, “통보함에 있어서 2이상”을 “통보할 때 둘 이상”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이를 통보하여야”를 “그 사실을 통보해야”로 한다. 제11조의2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2항”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인 조합원 수”로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위원회 위원의 위촉) 위원회 위원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을 “법 제24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법 제24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의결하여야”를 “심의·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용노동부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위원회 관련 업무”를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관련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경우”를 “받으려는 경우”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하여야”를 “10일 이전에 요구해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경우”라 함은”을 “경우”란”으로, “1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관할 노동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관할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관할 노동위원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해당 노동조합의 활동을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4조의6제1항 중 “법 제29조의2제2항”을 “법 제29조의2제3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반수 노동조합”을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6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는 노동조합 전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과반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기한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과반수노동조합이라는 사실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④ 노동조합이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제14조의7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로, “조합원의 서명”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서명”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확인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2개”를 “둘”로, “조합원”을 각각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개”를 “하나”로,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개”를 “둘”로,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원이 가입한”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가입한”으로,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본문 중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이”를 “과반수노동조합이”로,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을 “과반수노동조합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한다.

제1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9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반수 노동조합”을 “과반수노동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의7제8항”을 “제14조의7제9항”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과반수노동조합”으로, “제14조의7제8항”을 “제14조의7제9항”으로 한다.

제14조의9제1항 중 “법 제29조의2제4항”을 “법 제29조의2제5항”으로, “법 제29조의2제5항”을 “법 제29조의2제6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합의가 되지 않을”을 “합의되지 않은”으로, “조합원 수”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은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제출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및 비율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14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그 결정이 있는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까지 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하되,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된 때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유지한다.

제14조의11의 제목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교섭단위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섭단위를 분리하여”를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로,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노동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을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신청”으로,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신고는 법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법 제5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진행중인”을 “진행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노동관계당사자는 법 제52조에 따른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 또는 중재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를 개시해야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장제2절 또는 제3절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3조에 따라”로, “지체없이 당해”를 “지체 없이 해당”으로,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2조에 따라”로, “지체없이 당해”를 “지체 없이 해당”으로, “구성하여야”를 “구성해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관계당사자”를 “관계 당사자”로, “송달하여야”를 “송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로,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을 “특별노동위원회의”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관계당사자와 관계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하여야”를 “관계 당사자와 관계 노동위원회에 각각 송달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사자간에”를 “당사자 간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7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2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8.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산신고의 수리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15.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보

제3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고용노동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법률 제17864호, 2021. 1. 5. 공포, 7. 6.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 그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않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020. 9. 3. 선고 2016두32992)이 선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체교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